

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확인서

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1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대한 시험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합니다.

1. 시료내용

시료명	SR-708	신청자	대흥화학공업(주)
접수번호	17-061025-001-6	시료채취장소	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5번길 52 대흥화학공업 송탄2공장
시료채취 일시	2017.10.25	접수일자	2017.11.03
시료채취 방법	완제품 시료채취	검사목적	확인검사
대상건축자재 [] 접착제, [] 페인트, [√] 실란트(sealant), [] 퍼티(putty), [] 벽지, [] 바닥재, [] 기타 ()			

2. 오염물질 방출 시험 결과

가. 검사결과 종합

판정	적합
기준 초과항목	없음

나. 항목별 검사결과

(단위 : mg/m·h)

검사항목	기준	시험 결과
총휘발성유기화합물	1.5	0.291
톨루엔	0.08	N.D. [†]
폼알데하이드	0.02	N.D. [†]

† N.D. [Not detected(불검출 또는 방법 방법검출한계 미만)]

※ 방법검출한계(mg/m·h) : 총휘발성유기화합물 0.0001, 톨루엔 0.00003, 폼알데하이드 0.0007

한국 환경 산업 기술 원 장

